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미현	850702-2*****

■ 보장성보험료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류				
종 류	사업자번호	2	증권번호	•	주피보험자	1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	∤ 1	종피보험자	ł2	종피보험지	-3	
	현대해상화재보	험 (주)	무배당하이라이프 CO운전자?				
보장성	102-81-32	2***	L01111554	***	850702-2****	박미현	120,000
	삼성화재해상보	험 (주)	애니카 다이렉트 용)	(개인			
보장성	202-81-45	_ _ _ _	11407776300)***	850702-2*****	박미현	376,920
	삼성생명보험	(주)	무)퍼펙트통합	·보장			
보장성	104-81-26	5***	8048330710	***	850702-2*****	박미현	1,427,040
	인별합계금액		1,923,9			1,923,960	

- 1. 세액공제대상금액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(나이요건 제한 있음)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.
- 2.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: 보장성 보험료(연 100만원),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(연 100만원)





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병욱	501005-1*****

■ 보장성보험료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류				
종 류	사업자번호	호	증권번호		주피보험자	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지	l - 1	종피보험지	ł2	종피보험지	-3	
	동부화재해상보	험 (주)	프로미카개인	민용			
보장성	201-81-45	5 * **	01113292871	4***	501005-1****	박병욱	85,270
	동부화재해상보	험 (주)	프로미카개인	민용			
보장성	201-81-45	5 * **	22014307232	2***	501005-1****	박병욱	440,510
	우정사업된	르부	종합건강				
보장성	101-83-02	2***	06854130*	**	801119-2*****	박지아	253,200
	우정사업된	르부	종합건강				
보장성	101-83-02	2***	06854138*	**	850702-2*****	박미현	224,400
	인별합계금액		1,003		1,003,380		

- 1. 세액공제대상금액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(나이요건 제한 있음)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.
- 2.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: 보장성 보험료(연 100만원),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(연 100만원)





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미현	850702-2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5-18-50*	조*****	일반	43,200
2-23-05*	<u> </u>	일반	14,800
4-24-74*	라***	일반	201,000
4-34-09*	칠***	일반	8,600
4-91-67*	대***	일반	25,000
4-96-04*	경****	일반	8,5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301,1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301,100

- 1. 세액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- ※ 사내근로복지기금,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,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・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(보약포함)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
- 2.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: 본인·장애인·만65세 이상(한도없음),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





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병욱	501005-1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2-19-54*	정*	일반	129,700
2-90-92*	제***	일반	1,473,430
3-17-70*	평**	일반	6,200
3-90-93*	\f*****	일반	6,900
4-07-93*	칠***	일반	9,300
4-22-30*	칠***	일반	15,200
4-34-09*	한****	일반	4,500
4-82-00*	(*******	일반	36,200
4-82-01*	재********	일반	6,900
4-90-48*	칠****	일반	25,100
4-90-58*	복***	일반	7,500
4-90-63*	한**	일반	382,300
4-91-46*	강******	일반	25,100
4-96-02*	신****	일반	5,5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2,133,83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2,133,830

- 1. 세액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- ※ 사내근로복지기금,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,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・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(보약포함)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
- 2.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: 본인·장애인·만65세 이상(한도없음),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

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미현	850702-2*****

■ 2013년도 사용액 계

일반	6,952,973		
전통시장	36,452	인별합계 금액	7,288,425
대중교통	299,000		

■ 2014년도 사용내역

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
101-83-02***	우정사업본부	일반	293,670
101-83-02***	우정사업본부	대중교통	81,100
101-86-61***	(주) KB국민카드	일반	4,447,382

- 1. 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・직계존비속・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・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 '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・선불카드・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미현	850702-2*****

■ 2014년도 사용내역

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
101-86-61***	(주) KB국민카드	전통시장	27,000
101-86-61***	(주) KB국민카드	대중교통	1,489,400
104-86-23***	하나카드(구하나SK카드)	일반	195,920

- 1. 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・직계존비속・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・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 '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・선불카드・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미현	850702-2*****

■ 2014년도 사용내역

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	
104-86-23***	하나카드(구하나SK카드)	전통시장	0	
104-86-39***	농협은행 주식회사	일반	407,150	
104-86-39***	농협은행 주식회사	전통시장	2,000	

- 1. 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・직계존비속・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・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 '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・선불카드・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미현	850702-2*****

■ 2014년도 사용내역

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	
202-81-48***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 1,006,		
202-81-48***	신한카드 주식회사	대중교통	29,600	
214-81-37***	비씨카드 (주)	일반	1,229,830	

- 1. 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・직계존비속・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・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 '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・선불카드・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미현	850702-2*****

■ 2014년도 사용내역

(단위:원)

사 업 자 번	호	상 호 종류 공제다		공제대상금액	
214-81-37	⁷ ***	비씨카드 (주) 대중교통		0	
	일반			3,715,568	
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	전통시장		29,0		
	대중교통	995,90			
	일반	3,86			
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	전통시장				
	대중교통	604,2			
인별합계금	금액	9,209,9			

- 1. 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・직계존비속・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・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 '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・선불카드・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

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[현금영수증]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미현	850702-2*****

■ 2013년도 사용액 계

일반	1,017,800		
전통시장	0	인별합계 금액	1,017,800
대중교통	0		

■ 2014년도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	월별 공제	I대상금액		
현금영수증	 종류	1월	2월	3월	4월	 공제대상금액
20070	δπ	5월	6월	7월	8월	
		9월	10월	11월	12월	
		0	0	323,340	267,370	
현금영수증	일반	723,570	212,660	227,910	170,340	2,881,470
		162,870	321,230	230,870	241,310	

- 1. 공제대상금액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・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 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・선불카드・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

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[현금영수증]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미현	850702-2*****

■ 2014년도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	월별 공제	대상금액		
현금영수증	종류	1월	2월	3월	4월	 공제대상금액
20070	δπ	5월	6월	7월	8월	
		9월	10월	11월	12월	
		0	0	40,400	0	
현금영수증	대중교통	0	0	0	0	40,400
		0	0	0	0	
	일반					1,526,940
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	전통시장					0
EM MOS	대중교통					40,400
	일반					1,354,530
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	전통시장					0
	대중교통					0
인별합계금	액					2,921,870

- 1. 공제대상금액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・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 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・선불카드・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

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[현금영수증]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병욱	501005-1*****

■ 2014년도 사용내역 (단위:원)

	종류	월별 공제대상금액					
현금영수증		1월	2월	3월	4월	공제대상금액	
		5월	6월	7월	8월		
		9월	10월	11월	12월		
현금영수증	일반	0	45,200	0	26,000	119,200	
		0	0	6,900	8,400		
		0	23,700	9,000	0		
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	일반					71,200	
	전통시장	0					
	대중교통					0	
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	일반					48,000	
	전통시장	0					
	대중교통					0	
인별합계금액				119,200			

- 1. 공제대상금액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・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 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・선불카드・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